순천시 공고 제2025-514호

#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

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「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24일

순 천 시 장

# 1 사업개요

○ 접수기간 : 2025. 3. 4.(화) ~ 3. 14.(금) / 2주간

○ 사 업 량 : 1,200대

※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 신청 대수는 유동적

○ 지원대상 : <sup>①</sup>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<sup>②</sup>2009. 8. 31.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), <sup>③</sup>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굴착기

○ 지원금액 : 차종·연식·형식 등에 따라 상한액 내 차등 지원

○ 접수방법 : 방문, 인터넷, 등기우편 <u>※선착순 접수 또는 선정 아님</u>

① 방문 접수 : 순천시 이수로 13, 한화생명 건물 3층 소회의실 (월~금 10:00 ~ 16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※ 터미널 주변 공사 및 전용 주차공간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라며, 가급적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바람

- ② 인터넷 접수(건설기계·지게차·굴착기는 인터넷 접수 불가)
  -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://www.mecar.or.kr/

#### ※ 인터넷 신청방법

- "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" 홈페이지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[저공해조치신청] → 본인인증 → [차량조회 후 차대번호] 선택 →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 → 저공해신청 완료
- **※** 별도 구비서류 없음(저소득층, 소상공인은 해당 증빙서류만 3.14.까지 팩스 제출/FAX 061-749-4635)
- ※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, 지게차, 굴착기는 인터넷 신청 불가
  - ③ 등기우편 접수 ※ 3. 14.(금)우편 소인 찍힌 것까지만 인정

[57956] 순천시 이수로 13 한화생명 5층(장천동), 순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정책팀 조기폐차 담당자 앞

- 지원기준 : 1인당 1대 우선 선정 / 이후 다대 신청 차량 선정 (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/ 선착순 선정 아님)
  - ※ 위·수탁(지입) 차량은 법인의 위임받은 후 개인으로 접수 가능(위수탁계약서 및 위임장 등 서류 제출 필수)
- 선정통보 : 2025. 4. 7.(월) 이후 선정 통지서 개별 등기우편 발송
  - ※ 선정통보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  - ※ 선정통보일 이전 성능검사 및 폐차 시 보조금 지급 절대 불가

# 2 지원대상

- O 지원대상 차량 종류
  -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(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)
  - ② 2009. 8. 31.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(덤프트릭, 콘크리트믹서트릭, 콘크리트펌프트릭)
  - ③ Tier-1 이하 엔진을 탑재한 **지게차, 굴착기**로 **2004년 이전 제작**된 것 ※ 다만, 75kw 이상 130kw미만은 '05년 이전 제작, 75kw 미만은 '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
- ※ 배출가스 4.5등급 차량확인방법

(인터넷사이트) 포털사이트(다음, 네이버 등) →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(www.mecar.or.kr)
→ 소유차량 등급조회 → 휴대폰 본인인증 → 등급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여부 확인
(환경부콜센터) 1833-7435

- 위의 지원대상 차량이면서 아래 <u>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(총중량</u> 3.5톤 이상 및 건설기계, 소상공인은 5가지 조건)하여야 함
  - ① 접수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**순천시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**(차량의 사용본거지)
  -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(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)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
    - \* 도로용 3종 건설기계,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    - 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
  - ③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상 '원동기/동력전달'이 양호하고, 주요 부품이 정상 가동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
  - ④ 정부·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(도로용 3종 포함)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
  - ⑤ 총중량 3.5톤 이상 자동차·건설기계,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대상자는 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역산 6개월 이상 소유한 자

#### ▶ 지원제외

- 수출말소, 차령초과말소, 직권말소,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상태의 차량
- 대상자 선정통보 전 폐차한 경우
- 지방세, 세외수입(과태료 등),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
  - 보조금 지급 전 체납 여부 확인 후 납부 안내 문자 발송할 예정이며, 안내받고도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 취소할 수 있음

# 3 선정방법

- 1인당 1대 우선 선정 / 이후 다대 신청 차량 선정
- O 동일한 등급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  - ※ 선정대수는 등급별 예산액 및 선정된 차량의 개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
    - ① 작년도 조기폐차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, 예산부족 및 출고지연 등 보조금을 받지 못한 자
    - ②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(5등급 해당),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,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 · 보훈보상대상자 · 5.18민주화운 동부상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\*가 사용하는 보철용 · 생업활동용 차량, 소상공인
      - \*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: 상이등급 1~7급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: 신체 장애등급 1~14급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: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
    - ③ 택배차량. 어린이 통학차량. 총중량 3.5톤이상 차량
    - ④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
      - ※ 지원대상 범위 내 최하위 대상차량의 제작연월일이 동일할 경우, [총중량 〉 순천시에 차량 등록이 오래된 차량] 순으로 선정

# 4 보조금 지원조건

## 가. 조기폐차 시 기본(폐차) 보조금 지원

- (5등급) 폐차차량이 총중량 3.5톤 미만
  -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: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100% 지원
  - 그 외 자동차 :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100% 지원
- (5등급) 폐차차량이 총중량 3.5톤 이상 및 건설기계, 지게차・굴착기
  -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100% 지원
  - ※ 폐차 차량기준가액 확인방법: 보험개발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idi.or.kr/user/car/carprice.do)에서 조회 가능

- (4등급) 폐차차량이 총중량 3.5톤 미만
  -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: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50% 지원
  - 그 외 자동차 :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70% 지원
- (4등급) 폐차차량이 총중량 3.5톤 이상 및 건설기계, 지게차·굴착기
  -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100% 지원

### 나. 조기폐차 시 추개(구매) 보조금 지원

- ※ 폐차와 신차 차주가 동일해야 하며, <u>2024. 11. 1. 이후</u> 소유자 명의로 신규 등록(중고차 명의이전 등록 포함)한 차이며 폐차할 차량보다는 이후에 소유한 차여야 합(등록일자는 등록원부로 확인함)
  - (5등급) 폐차차량이 총중량 3.5톤 미만
    -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<u>신차(배출가스 1·2등급만 가능)로 구매 시 폐차</u> 차량기준가액의 50% 지원
    - 전기, 수소차량을 신차로 구매 시 <u>50만 원 추가 지원(상한액 초과 불가)</u> ※ 이륜차, 상품용(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) 제외
  - (4등급) 폐차차량이 총중량 3.5톤 미만
    -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(1·2등급만 가능)로 구매 시
      -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: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50% 지원
      - 그 외 자동차 :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% 지원
    - 전기, 수소차량을 <u>신차 또는 중고로 구매 시</u> 50만 원 추가 지원(상한액 <u>초과 불가)</u>
    - ※ 이륜차, 상품용(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) 제외
    - ※ 중고차 구매시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량은 2013.1.1.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가능

- 폐차차량이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
  - (신차 구매 시) 배출가스 1·2등급 3.5톤 이상 차량 또는 Euro6 이상 차량을 신차로 구매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% 지원
  - (중고차 구매 시) 배출가스 1·2등급 3.5톤 이상 차량 또는 2017. 10. 1. 이후 제작\*된 Euro 6 이상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100% 지원
  - \* 중고차 제작일자는 <sup>①</sup>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'제작연월일' 또는 <sup>②</sup>자동차 제작사에 요청한 제작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,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, 등록일자 등은 인정하지 않음
  - \* 해당 제작연월일은 신청자가 중고차 구매 전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며 이를 확인 하지 않고 추가 지급 조건에 맞지 않은 차량 구매 후 보조금 청구 시 보조금은 미지급되며 순천시는 차량 구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
  - 3.5톤 이상 차량을 구매하여야 하며, **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** (도로용 3종은 규격)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하여야 함
  - 다만,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(최대적재량, 배기량, 규격)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(ps)이 같거나 작은 경우 20% 범위 일부 증가 인정
- 신차인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: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% 지원
  -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차 구매 시 <u>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% +</u> 50만원 지원(상한액 초과 불가)
    - ※ 이륜차, 상품용(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) 제외※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제외

#### 추가(구매)보조금 지원 불가

-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 폐차 →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구매(추가지원 불가)
-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폐차 →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 구매(추가지원 불가)
-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폐차 →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(추가지원 가능, 단 차량 조건 만족 시)
-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→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구매(추가지원 가능, 단 차량 조건 만족 시)
-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→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(추가지원 불가)
- 지게차 폐기 →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→지게차 구매(추가지원 불가)

<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(자동차, 도로용 3종 건설기계) >

		ы	상한액		지원	년 <b>율</b>	
	구 ·	<u> </u>	(기본+추가, 만원)	기 <del>본</del> (폐차)	추가 지원(차량구매)		
	① <del>총</del> 중	등량 3.5톤 미만	300	100%	<b>50</b> % (신차)	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신차	
		3,500cc 이하	440				
5등급	② <b>총</b> 중량	3,500cc 초과 5,500cc 이하	750			200%(신차)	
자 <del>동</del> 차	3.5톤 이상	5,500cc 초과 7,500cc 이하	1,100	100%		200%(전자)	
		7,500cc 초과	3,000		100%(중고차)		
		, 콘크리트믹서트럭, 리트펌프트럭	4,000				
	①총중량	<del>승용</del> (5인승 이하)	800	<b>50</b> %	<b>50</b> %	무공해차 구매시	
	3.5톤 미만	그 외	800	<b>70</b> %	<b>30</b> %	50만원 추가 지원	
		3,500cc 이하	720		200%(신차)		
4등급 자동차	② <b>총</b> 중량	3,500cc 초과 5,500cc 이하	1,600				
시중시	3.5톤 이상	5,500cc 초과 7,500cc 이하	2,400	100%			
		7,500cc 초과	7,800		100%(중고차)		
		, 콘크리트믹서트럭, 리트펌프트럭	10,000				

<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(지게차, 굴착기) >

7 8	ᄎᄌ라	상한액	지원율			
구 분	총중량	(기 <del>본</del> +추가, 만원)	기본(폐차)	추가 지원(차량구매)		
	16톤 미만	1,650				
굴착기	16톤 이상 33톤 미만	2,700		200%(신차)		
	33톤 이상	7,900	1000/			
	9톤 미만	1,050	100%	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		
지게차	9톤 이상 18톤 미만	3,400		50만원 추가 지원		
	18톤 이상	12,000				

## 다. 그 외 보조금 산정 시 인정 조건

○ (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) 5등급 차량(총중량 3.5톤 미만)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 보조금에 화물·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지원(상한액 초과 불가) 다만, 매연 과다, 하부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

- O (저소득층 추가지원) 저소득층은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지원(상한액 초과 불가)
  - ※ 저소득층 추가지원은 1년에 2대까지만 적용하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중복 불가
  - ※ 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복지로 홈페이지 발급)
  - ※ 차상위계층: 차상위계층확인서,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,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, 차상위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(아동) 수당 수급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(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)
    -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(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) **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**

#### 저소득층 지원 사례별 적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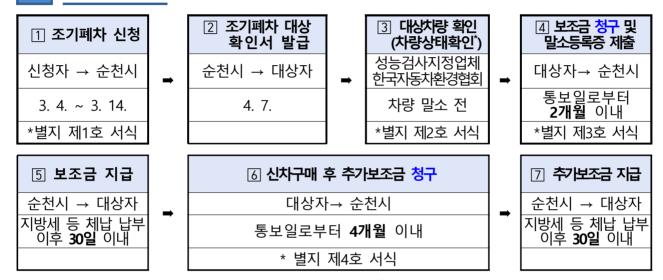
-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(공동명의 차량) 모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·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
- 운수회사(법인)명의로 등록한 개인 소유차량(지입차량)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, 차량소유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·의료·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인정
  - ※ 지입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
- (소상공인 추가지원) 소상공인은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지원(상한액 초과 불가)
  - 소상공인 증빙서류 제출기한 : **2025. 3. 14.(금)까지 팩스 제출**
  - ※ 차주 명의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, 3. 14.(금)까지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
  - ※ 제출 기한 내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소상공인 추가지원 인정

공통 제출서류	- 사업자 등록증,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매출액	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
확인서류	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
	- 상시근로자 無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
상시근로자 확인서류	- 상시근로자 有 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월별 사업장, 가입자
	별부과현황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택 1
확인 기준	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「중소기업범위 해설서」
복한기군	(60~ 68페이지 등)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
비고	-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
	지방중기청에 문의

- ※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,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,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
- ※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(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)
- ※ 소상공인지원금 지원 가능 대수 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최대 9대/년, 그 외 최대 4대/년
- ※ 소상공인 추가지원은 저소득층 추가지원과 중복 불가

○ (대상차량확인 비용)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,000원/대 지원(현장 확인 검사수수료가 14,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하며,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)

# 5 지원절차



※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(4. 7. 전) 미리 폐차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# 가. 지원 신청서 제출 [3. 4. ~ 14.]

-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(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)
  - **(공통)** ① 사업 지원신청서 1부[별지 제1호 서식]
    -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
    - ③ 자동차 소유자(법인 대표자) 신분증 사본 1부
  - (법인의 경우)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②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
  - (해당하는 경우)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
  - (소상공인)
    - ① 사업자 등록증,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    - ② 매출액 확인서류: 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택1
    - ③ 상시근로자 無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월별 사업장, 가입자별 부과현황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택 1

#### 나. 성능검사 및 폐차 [4, 7, ~]

- 선정 대상자 통보일(2025. 4. 7.) 이후 선정자에 한해 성능검사 실시하여야 함
  - 주요 부품에 '정비요' 또는 '불량'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어야 함
- O 성능검사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후 폐차 진행하여야 함
- O 인터넷(www.escar.or.kr) 통한 성능검사 가능하며, 차주 본인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(4. 7. 이후 진행하여야 함)

#### <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 발급 지정업체>

연번	업 소 명	전 화 번 호	소 재 지
1	(사)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	751–0511	원가곡1길 6-18(가곡동)
2	팔마자동차 정비공업사	742-0077	양율길 71(야흥동)
3	대림자동차 공업사	755–3171	중앙로 336(가곡동)
4	세진자동차공업사	744–2040	팔마로 207(덕암동)
5	신동성자동차공업사	723–5590	해룡면 여순로 1724-12
6	동산자동차공업사	755-0030	서면 둔대수계길 7
7	예술자동차 정비 공업사	751–7000	강청길 148(용당동)
8	(유)봉화자동차 1급공업사	726–2646	해룡면 율촌산단4로 77-53
9	메인카서비스	010-6660-6556	원가곡길 15(가곡동)

※ 타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기록부도 제출 가능

### < 건설기계 검사소 >

연번	업 소 명	전 화 번 호	소 재 지
1	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전남건설기계검사소	795–4111	광양시 산업로 11(태인동)

### < 관내 폐차장 현황>

연번	업 소 명	전 화 번 호	소 재 지
1	중앙산업	742–4335	녹색로 1336(인월동)
2	순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	724–6464	해촌길 40(조례동)
3	금성산업	724–5887	서면 매천로 221

※ 타지역 폐차장에서도 폐차 가능

### 다.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

- <u>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까지</u>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(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)
-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
  - (공통)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[별지 제4호 서식]
    -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
    - ③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(법인)명의 통장 사본 1부
    - ④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
    - 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부(원본)
    - ⑥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[별지 제3호 서식]
    - ⑦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1부
    - ⑧ 자동차 소유자(법인 대표자) 신분증 사본 1부
    - 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
  - (공동명의의 경우) 위임장 + 위임자 신분증 사본 +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

## 라. 폐차 후 신채(중고차) 구매 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

- 선정 통보일로부터 <u>4개월까지</u>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
-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
  - (공통)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뷔별지 제5호 서식]
    -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    - ③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(법인)명의 통장 사본 1부
    - ④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
  - (공동명의의 경우) 위임장 + 위임자 신분증 사본 +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
- O 2024. 11. 1. 이후 등록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 가능
- ※ 단,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(건설기계 포함)·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(건설기계 포함)·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(구매) 보조금 신청 가능(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)
- <u>폐차하는 차량과 신차(중고차 포함)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</u> ※ 차량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

### 마. 보조금 지급

-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
  - ※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
  - ※ 지방세, 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될 수 있음
- 보조금은 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<u>신청자 명의의 본인(법인) 계좌</u> (통장사본 제출 필수)로 지급

# 6 기타사항

- 지방세(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 포함) **체납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불가**
- 보조금 청구 시 차량 말소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부과하며, 완납 확인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
- O 사업 신청 후 차량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변경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」 및 순천시 의견에 따름
-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확정 통보 시 등기우편으로 알 수 있음
-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, 지원 대수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보조금 청구서(추가지급 청구서 포함) 제출 이후에는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, 보조금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
- 기타 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정책팀(※061-749-5785)으로 문의
- 붙임 1. [별지 제1호 서식]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.
  - 2. [별지 제2호 서식]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.
  - 3. [별지 제3호 서식]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.
  - 4. [별지 제4호 서식]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.
  - 5. [별지 제5호 서식] 위임장 1부.
  - 6. [별지 제6호 서식] 청렴이행서약서 1부.
  - 7. [별지 제7호 서식]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.

		조기폐차	보조금	지급	대상 확인	인 신	<u>.</u> 청서	
		①성 명(법인명) (공동명의자 모두 기재)			②생년월일 (공동명의자는 19 모두의 생년월일	[ 명의자 ! 기재)		
소	유자	※ 법인일 경우 '대표지 □ 성명 : □ 생년월일 :			상확인서 전자 ] 휴대전화 : 민번호 뒷자리 첫			
		③주소(사용본거지)						
		<ul><li>4 휴대전화(차주본인)</li></ul>			⑤FAX			
	911 1.1	⑥차량번호			⑦차대번호	<u>-</u>		
	내 상 Etl 미	│ │⋒⊓── <del>Т</del> І⋤ <b>┼</b> Ӏ	□ 연식(	)	년 🗆 배	기량(	)CC	
-	동차 및  게차	⑧□ 자동차   □ 건설기계	정원(승합)	명	규격(건설기계	해당) (	)	
	기기시 또는		중량(화물)	□적재-	중량( )	)톤 🗆	총중량(	)톤
	ㅗᆫ 남착기	⑨ <b>차명</b> (건설기계명)			⑩형식			
	- 1 1	⑪배출가스 등급		등급	① 사용 연호	료		
운형	행 상태	① 정기·종합 검사 일자			⑭검사 기급	관		
환	경개선	부담금 대상 여부	□ 자동	통차	※ 해당 차량은 발생) 납부를 제출시 반드	· 환경개· - 완료하	∦당 □ 미해당 선부담금 수시분(폐치 고 납부 증명서를 보 하여야 함	낭 '입고일 전일까지 조금 지급 청구서
	선폐차(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 선 이행 신청) 여부 확인							
보	본인은 조금 지	지자체 공고문을 : 급이 가능한지 여부	확인하고 위 부를 확인하(	와 같이 여 주시	차량을 조기 기 바랍니다	' 폐차 나.	하고자 하오니	조기폐차
*	<ul> <li>※ 참고사항: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,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</li> <li>※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, ②생년월일(법인일 경우 법인번호, 사업자 등록번호 등)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미기재(오기재)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년 월 일</li> </ul>							
순	·천시장	귀하		신	청자 :		(서명 또는 (	<u>Pl</u> )
		신청인	<u>민</u> 제출서류				당공무원 또는 대행자 확인사항	수 수 료
개인 1.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.(공통, 공동명의자 모두) 1. 자동차 또 2.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.(도로용 3종, 지게차, 굴착기 해당) 기계 등록:						동차 또는 건설 계 등록원부		
비 서 류	법인	1.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 1부.(공통) 2.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.(도로용 3종, 지게차, 굴착기 해당 3. 자동차 등록증 1부.(공동명의자만 해당)				2. 사   기	동차 또는 건설 계 검사결과	없 음
	해당자 1.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. 2. 배출 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.(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) 3. 차량 사양 증빙서류(제작사 또는 보험회사)							
본	인은 이	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	겨 「전자정부법	l」제21조	제1항에 따른	행정정	보의 공동이용을	통하여 담당
공무	<sup>1</sup> 원 또는 <sup>3</sup>	절차대행자가 위의 '담당	공무원 또는	절차대행지	<b>화인사항'을</b>	확인하	는 것에 동의합니	<b>라</b> .
					신청인		(人	명 또는 인)

## [별지 제2호 서식]

확인	번호	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(차량상태확인)서 🗎 <sup>온라인</sup> 현장							
			 성 명		생년돭	월일			
소 <u>-</u>	유자	주 소							
<u> </u>		휴대전	<u>선화(</u> 차주 본인)		FAX				
			 나량번호		차대번호	<u> </u>			
	청 동차			□연식(	 )년 🗆	배기량(	)CC		
	기계차 기계차	│ │	동차	□차량명(건설기	계명) :				
	:는 착기		 설기계	정원(승합):	명		<del>규</del> 격(건설기계) ( )		
之	- 1 / 1			중량(화물) : □ <sup>2</sup>	적재중량(	)톤 □총	중량( )톤		
	동 확	일성 ·인	- 부착된 등록	록번호와 등록증	상 일치		□ 일 치 □ 불일치 □ 식별불가		
		동기	- 원동기(시동	등)작동 여부			□ 가 능 □ 불 가		
		<b>달み</b> 기 기포함)	- 변속기의 <sup>2</sup> - 변속 시 동	작동 여부 력 전달 여부(전	전·후진)		□ 가 능 □ 불 가 □ 전진 또는 후진 불가		
		향	- 정상 작동 (				□ 가 능 □ 불 가		
	제	동	- 제동 가능 여부				□ 가 능 □ 불 량		
하			- 유압유의 상태, 유압유 누출 여부			확	□ 양 호 □ 불 량 □ 단순 불량(유압유부족)		
확 인		' <b>장치</b> !기계)	- 각 작 <del>동</del> 부으	작 <del>동</del> 상태		│ 확 │ 인 │ 결 │ 과	□ 양 호 □ 불 량 □ 단순 불량		
항				이상소음 여부		과	□ 양 호 □ 불 량 □ 단순 불량(소음)		
목		- 차제 외관		상태			□ 양 호 □ 불 량 □ 일부 파손(찌그러짐)		
			- 완충장치 성	낭태(차량)	정상가동에 지	:1	□ 양 호 □ 불 량		
	그외 부	주요 품	- 유리창 파선	<u></u> 상태	장을 주지 않 는 경우 판정이	<b>と</b>	□ 양 호 □ 불 량 □ 단순 파손(일부파손)		
	'		- 타이어 장착	여부 및 상태	미반영		<ul><li>□ 양 호</li><li>□ 불 량</li><li>□ 단순 불량(공기압부족)</li></ul>		
			- 등화장치 설	설치 상태			□ 설치 □ 미설치 □ 단순 파손(일부 깨짐)		
	첨=	부물		<ul><li>□ 온라인 대상처량확인 시스템(escar.or.kr)<sup>0</sup></li><li>□ 현장 확인 : 사진 4매(전・후・좌・우</li></ul>			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		
판	정	정상	가동 여부	□ 가	□ 부				
결 과 불가 사유					종합의 견				
*	온라인 7 검사 시( 비수도권	검사비 가 에도 온리 빈 현장 혹	준 대상처량확인 2 1인 검사와 동일한 11인의 경우는 보2	14,000원 지원 및 S금 청구서(별지4호	금 지원(지자체 현장 확인 검사 i) 제출시 납부 차환경협회 전	직접 검사 수수료가 한 수수료	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14,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) 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 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(인)		

## [별지 제3호 서식]

확인번호		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
	성 명	생년월일
소유자	<u></u> 주 소	J C E L
	휴대전화(차주 본인)	FAX
	차량번호	차대번호
		□ 연식( )년 □ 배기량( )CC
신 청	□ 자동차	정원(승합): 명 규격(건설기계)( )
자동차	□ 건설기계	중량(화물) : □ 적재중량( )톤 □ 총중량( )톤
및	 최초등록일자(차령)	년 월 일(년 월)
지게차	배출가스 등급	사용연료
또는	보조금신청금액	원 (₩ )
굴착기		원 (₩ )
	대상차량확인 보조금	
폐차	말소 일자	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
환경개신	선부담금 수시분	□ 자동차 □ 해당 □ 미해당 ㅂ+ 일자 :
폐차 후	신차(중고차) 구매 여부	□ 구매 또는 예정(추가 청구 예정) (□ 신차 □ 중고차) □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
신차 ᄼᄌᄀᆂᄓ	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	년 월 일(년 월)
(중고차) 구매	자동차(건설기계) 제원	□ 차량명(건설기계명): □ 차량연료: □ 연식( )년
른 보조금; ※ 첨부 서	을 지급하여 주시. 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	-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, 지자체 또는
	뱅자가 검토하여 소상공 <sup>(</sup> 및 환수될 수 있음	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
		년 월 일
	순천시	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 장 귀하 ※ 서명 인정됨(단, 법인은 날인)
※ 조기 2. 자동 3. 조기 량 <sup>호</sup> ※ 비쉬 원 <sup>1</sup> 4. 기초	차 말소 등록증 도  폐차 대상자 선정  차 소유자의 보조  폐차 대상차량 확( 확인을 받은 차량은 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물가(추후 번복 불가)  생활수급자·차상유	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(원본 또는 사본) 전 폐차(선폐차)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인서(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)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,000원 지 위계층,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(해당자에 한함) 분 납부 증명서류(해당자에 한함)

#### [별지 제4호 서식]

확인번호		 기폐차	<u></u> 보	 조금	추기	·지급 청·	구서		
	성 명				생년월일				
소유자	주 소	※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			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(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인			검토 지연)	
	휴대전화(차주 본인)					FAX			
	차량번호					차대번호			
신규 ᄼᄌᄀᆂᄔ		□연식(		)년 🗆	배기량( )CC □ 된		용도	.: (	)
(중고차 포함)	자동차(건설기계) 제원	□차명 :				□ 정원	(승합)	: 5	경
구매 차량 정보		□적재중령	- 량(	_ )톤 [	□총중량	-( )톤 □규?	격(건설기	기계) (	)
	최초등록일자(차령)		년	월	일 (	( 년	월)		
(지게차 또는	등록일자(명의변경일)		년	월	일	바출가스 등급	l. i		
굴착기)	제작일자		년	월	일	사용연료			
	추가 보조금신청금액	□ 신차 □ 중고		중고차	원		원 (₩	<i>†</i>	)
ᆒᆂᆝᆌᆋ	차량번호				폐차 업체명 및				
폐차 관련 <sub> </sub>	말소 일자								
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(추후 번복 불가) 신고하니,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(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)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									
						년	<u>Į</u>	월	일
				신청기	자 :	(.	서명	또는	인)
순천시장	: 귀하				3	※ 서명 인정	됨(단,	법인	은 날인)
※ 첨부서	류								

- 1.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(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)
- 2.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(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)

## [별지 제5호 서식] 공동명의/위수탁/지입차량인 경우에만 작성

위 임 장

	주	소						
수 임 자 (위임을 받는 자)	성	명	(서명/인)					
	생 년	월 일						
	주	소						
위 임 자 (위임을 하는 자)	성	명	(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					
	생 년	월 일						
	구	분	자동차번호	자동차명				
대상차량정보	폐차 또는 구매?	=						

※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시 인감도장 날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

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

- 붙임 1.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
  - 2.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.

2025년 월 일

위임자: (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)

순천시장 귀하

####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청렴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순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순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, 제38조, 제39조, 제40조)>

#### ○ 벌칙(제37, 38, 39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 부과
- 다음 각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 부과
  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
-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·양도, 교환 또는 대여 ·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한 자
- 다음 각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**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** 부과
  -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임의 변경할 시
-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할 경우
- 다음 각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** 부과
  -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의무보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하였을 때
  -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  - 시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검사 관련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

#### 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-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. . .

순천시장 귀하

신 청 자

(서명/인)

[별지 제7호 서식]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### ★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- (수집・이용기관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,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(한국자동차환경협회), 「대기환경 보전법」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・운영기관(한국 환경공단)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82조의2 및「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(교통안전공단)
- O (수집·이용목적)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, 저공해(LPG)엔진 개조·교체,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
- O (수집항목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차량등록번호, 생년월일
- (보유·이용기간)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\* 근거: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
- (동의 거부권리 안내) 본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.

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(성명) (서명, 날인)

순천시장 귀하

## 온라인 신청방법 및 차량 등급제 확인 방법

순서1) 회원가입(배출가스 등급제)

-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(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) 접속
- ② 회원가입 클릭(홈페이지 오른쪽 상단)

일반회원 가입 ⇒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⇒ 만 14세 이상가입 ⇒ 본인인증 클릭 ⇒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⇒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⇒ 문자인증 클릭 ⇒ 개인정보 입력 ⇒ 확인 클릭 ⇒ 인증번호 6자리 입력 ⇒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⇒ 가입신청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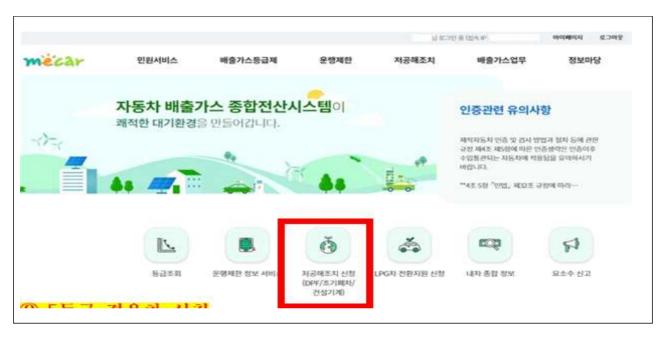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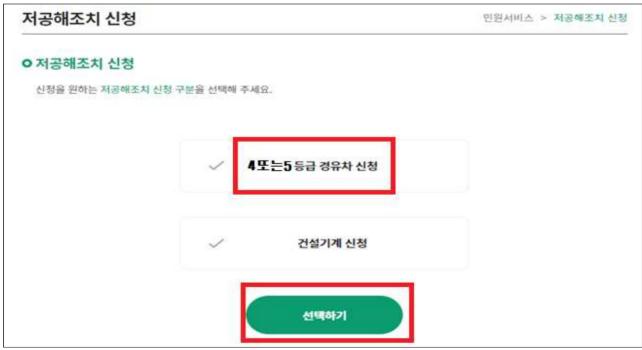
#### 순서2)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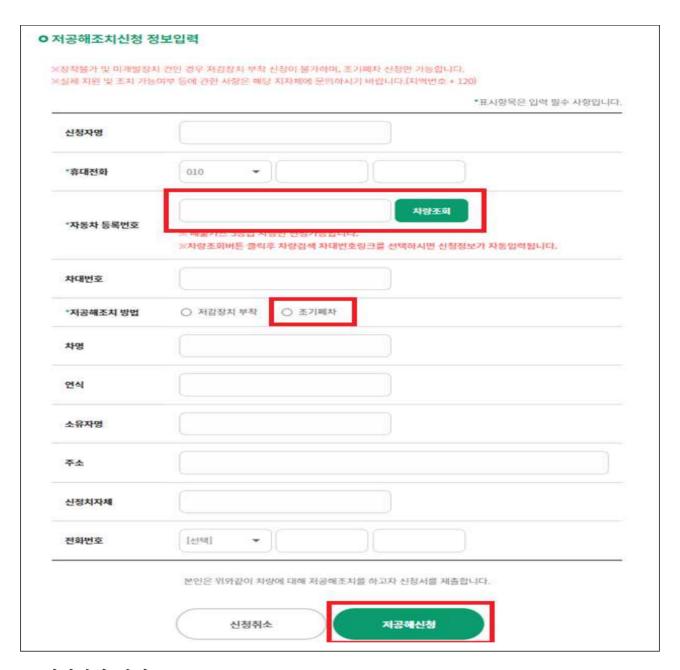
#### <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>

- ◆ 저공해조치 신청(DPF/조기폐차/건설기계) 클릭⇒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
  - ⇒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(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)

저공해조치방법(\*) 조기폐차 클릭⇒ 저공해신청 클릭







#### ※ 법인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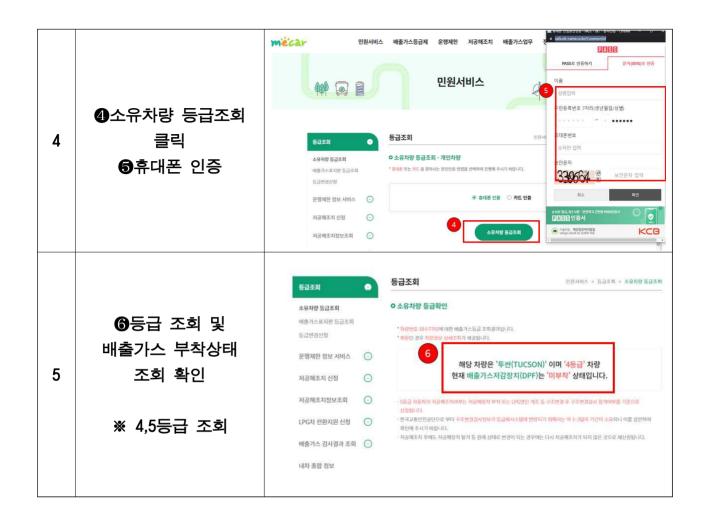
- 회원가입 :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

- 차량신청 :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⇒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⇒ 차량조회 ⇒

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

[차량등급 조회 방법]





### 조기폐차 성능검사(대상차량확인) 온라인 신청방법

□ 준비사항: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<u>차량</u> 사진 5매, 동영상(1분 이내)을 촬영하여 준비

<문의사항 연락처: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심은섭 팀장 070-4353-2716>

※ 차량 사진 전·후·좌·우·차대번호(또는 후면 번호판) 5매, 동영상은 차량 전진·후진 등 1분 이내 촬영



